

제 1204 호
1985.10.22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업무관
편집인 : 공보관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37

계	보도국장	공보처장	공보관	공보
				공보

시보

차례

◎ 고 시	
제 709 호 : 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	2
◎ 공 고	
제 626 호 :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(기간연기) 공람공고	2
제 627 호 : 도로공사계획공고	3
제 628 호 : 도로공사 및 가트등시설공사계획	4
◎ 구청공고	
도봉구공고제 364 호 : 공인개자 및 폐기공고	4
◎ 사 령	

공											
람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770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09 호

도시계획시설 (시장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643 호 (85. 9. 27) 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

(시장)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한다.

2.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10. 22.

서울특별시장

도시계획 시설 (시장) 지적 승인조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규 모	비 고
신 설	시 장	강동구 명일동 347-3 의 1 필지	1,406.2 ㎡	

*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공 고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26 호

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(기간연기)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영동2, 신당, 청량, 양재, 경인, 김포, 구로 및 가락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토지

구획정리 사업을 계획변경 (기간연기) 하고자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보인다.

2.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통지는 아니하고 본 광고로 갈음한다.

1985. 10. 22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기간 연기내역					
지구명	인가면적 (㎡)	시행자	사업시행기간		비고
			기정	변경	
영등2	13,071,858	서울특별시	'71. 8.24 '85.12.31	'71. 8.24 '86.12.31	1년연장
신당	429,752 중 214,289	"	'40.10.21 '85.12.31	'40.10.21 '86.12.31	"
청량	1,100,182 중 99,054	"	'40.10.21 '85.12.31	'40.10.21 '86.12.31	"
양재	154,839	"	'83.11.22 '85.12.31	'83.11.22 '86.12.31	"
경인	7,313,629	"	'68. 1.18 '85.12.31	'68. 1.18 '86.12.31	"
김포	4,706,334	"	'68. 1.23 '85.12.31	'68. 1.23 '87.12.31	2년연장
구로	1,474,896	"	'79. 3.29 '85.12.31	'79. 3.29 '86.12.31	1년연장
가락	7,452,002	"	'82. 3.20 '85.12.31	'82. 3.20 '87.12.31	2년연장
도면생략.					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627 호</p> <p>도로공사계획공고</p> <p>1. 도로법 시행령 제 24 조의 3 및 도 가. 도로공사 계획조서</p>			<p>로시행규칙 제 17 조의 2 에 의거 도 로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 다.</p> <p>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주택과에 비 치·열람케 한다.</p>		
노선명	공사구간	공사명	시행자	공사기간	비고
서울특별시도	상도동 210-114-228	상도동 210-228 도로개설공사	등각 구청장	85.11 -86.5	
"	흑석동 33 번지	흑석동제 2 구역 재개발도로개설공사	"	"	
* 도면생략					

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본 공사구간내 지하매설물(전화,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등)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 공사기간중에 시행토록 하기 바란다.

1985.10.22.
서울특별시 장

◎서울특별시공고제 628 호
도로공사 및 가로등시설공사계획

1. 도로법 시행령 제 24 조의 3항에 의거 도로공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.
2.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열람케 한다.

가. 도로공사 계획조서

노선명	공사구간	공사명	시행자	공사기간	비고
서울특별시도	신림11동730의8~729간 봉천8동918의1~12간	신림11동730의8~729 외 1개소 도로포장	관악 구청장	85.10 ~11.30	
" (신림로)	신림동409의6~216간 " 92의276-103의206	신림로 가로등 시설공사	"	"	"가로등"

* 도면생략

위와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(전화, 전기, 상하수도, 도시가스등)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본공사 기간중에 시행하기 바란다.

1985.10.22
서울특별시 장

구 청 공 고

◎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제 364 호

공인개각 및 폐기공고

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3 조의 규정

에 의거, 다음과 같이 당구 산하 미야 제 3 동의 10개동의 민원사구전용동장 직인 및 계인을 개각, 사용 승인하고, 기 사용 공인(직인 및 계인)을 동규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함을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 조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.

1985.10.21.

도 봉 구 청 장

가. 공인개작동명 : 리아계 3 동, 미아계 6 동, 빈계 1 동, 수유계 1 동, 수유계 3 동, 창계 1 동, 월계계 1 동, 쌍문계 2 동, 공릉계 2 동, 도봉계 1 동, 도봉계 2 동.		나. 사용개시일시 : 1985.10.21. 09:00 다. 개작공인인영 :	
	제 기 (민원사무전용)	개 작 (민원사무전용)	
인영			
공인명	미 아 계 3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		
인영			
공인명	빈 아 계 6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		
인영			
공인명	창 계 1 동 장 의 직 인 및 계 인		

	폐 기 (민원사무전용)	개 각 (민원사무전용)
인 영		
공인명	수 유 제 1 등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	
공인명	수 유 제 3 등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	
공인명	창 제 1 등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	
공인명	월 세 제 1 등 장 의 직 인 및 계 인	

	패 기 (민원사무전용)	개 각 (민원사무전용)
인 영		
공인명	상군제 2 동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	
공인명	공릉제 2 동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	
공인명	도봉제 1 동장 의 직 인 및 계 인	
인 영		
공인명	도봉제 2 동장 의 직 인 및 계 인	

사 령

◎ 1985년 10월 22일

령계 394 호
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김 일 섭	부직을 명함.	성동구 민방위과	지방행정주사보

령계 396 호

성 명	발 령 부 서	현 부 서	직 급
황 인 문	총무처 소청 심사위원회 (사건 85-178 '85.9.30) 의 결정에 의거 '85.7.22 자 견책 처분을 동일자로취소함.	도봉구 주택과장	지방행정사무관

서울특별시장